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제 1247 호 2020. 8. 6.(목)

### 훈 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0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]…………… 1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42호[하천 점용허가(변경) 고시]……………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4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…………… 4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921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]…………… 5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(인)

2020년 8월 6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0호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◆

**1. 폐지이유**

- 행정안전부의 「행정서비스 헌장 규정」 개정으로(2009. 9. 4.),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」이 유명무실화되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」 폐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142호

## 하천 점용허가(변경)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장덕진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58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인공구조물(온실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시례동 7-7

나. 면적 : 378.66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당초 : 2018. 09. 01. ~ 2020. 07. 31.

변경 : 2020. 08. 03. ~ 2023. 07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14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호계로 380-3	신천동 433-9	2020. 8. 6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8. 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921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,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재전길 도로명 변경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0. 8. 6. ~ 8. 20.(14일간)

2. 공고내용 : 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
현행 도로명	도로명 변경(안)	현행 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변경 사유
천곡재전길	천곡제전길	2004. 8. 9.	신청에 의한 변경

※ 현행 도로명 조서 및 도면(붙임1 참고)

※ 공고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 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의견 제출대상 : ‘천곡재전길’ 주소사용자(2020. 7. 27. 기준)

4. 의견 제출방법

- [붙임2]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방문 및 우편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1층 민원지적과 지적계 (연암동, 북구청)
  - 팩스 : 052-241-7569
  - 이메일 : loveqkr96@korea.kr

5. 도로명 확정 : 의견 수렴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고 및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됩니다.

[붙임 1. 현행 도로명 조서 및 도면]

현행 도로명 조서

시작지점	끝지점	도로 중심선	관할 행정구역	길이 (m)	폭 (m)	기초간격 (m)	기초번호	도로명
중산동 808-10	천곡동 183-3	노선도 참조	중산동 천곡동	1399.591	3	21	1-138	천곡재전길

현행 도로명 도면



[붙임 2. 의견제출 서식]

**도로명 변경(안)(천곡재전길→천곡제전길)에 대한  
귀하의 의견을 듣습니다.**

주 소 (도로명주소)	
성 명 (세대주)	
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의견 (1안 : 천곡제전길)	
기타 의견	

※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하시고, 1세대 당 1인 작성바랍니다.

■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[052-241-7583]

■ 제출방법

- 방문 및 우편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1층 민원지적과 지적계 [연암동, 북구청] [우편번호 : 44248]
- 팩스 : 052-241-7569
- 이메일 : loveqkr96@korea.kr